『정책형 뉴딜펀드』2021년 정시(기업투자) 선정계획 공고

정책형 뉴딜펀드 2021년 정시(기업투자) 위탁운용사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개 요

항 목	세부내용							
정책출자자 위탁운용금액	○ 정책출자자 위탁운용금액 : 7,450억원 내외							
	○ 분야별 출자계획 (단위: 억원					단위: 억원)		
	지	원 분야		[[[[[[[[[]]] []] [] [펀드별 제안규모	펀드별 ^{주1)} 최대출자액	조성 목표	주관 기관 ^{주2)}
		● 투자제안형	2,100	35.0%	500~1,200	420	6,000	성장
	블라인드	마 구자세현광	1,750	35.0%	1,200 초과	875	5,000	산은
		수 뉴딜성장형	2,700	30.0%	1,500 이상	1,500	9,000	산은
	프로젝트	❸ 투자제안형	900	45.0%	100 이상	-	2,000	성장
		합 계	7,450				22,000	
분 야 별 출자계획	비: 주2) '산 ○ 운용사 ○ 펀드규' 자율제약 - 정책출 ○ 블라인 최종결/ 대한 관	주1) 조성목표, 정책출자비율 및 최대출자액은 선정된 운용사의 제안규모, 정책출자비율 선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주2) '산은'은 한국산업은행, '성장'은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을 의미 ○ 운용사는 지원분야를 자율 선택할 수 있으나, 중복지원은 허용되지 않음 ○ 편드규모는 제안시 ●투자제안형은 100억원, ❷뉴딜성장형은 500억원 단위로 자율제안 (단, ❸투자제안형은 100억원 이상 자율제안) - 정책출자 금액 및 비율은 조성목표금액 범위내 변동 가능 ○ 블라인드 펀드의 경우 민간출자자 모집의 과도한 경합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종결성은 제안규모의 200% 이내로 제한하되, 부득이한 경우 200% 초과분에 대한 관리보수는 하향조정 등 별도협의 ○ 소정의 심사결과 및 정책출자자 위탁운용금액에 따라 분야별 정책출자자						
운 용 사 선정방법	○ 홈페이지* 공개모집 공고 등을 통해 주관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 - 운용사, 운용인력, 펀드운용계획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 * 한국산업은행: www.kdb.co.kr, 한국성장금융: www.kgrowth.or.kr							
접수일시	2021년 1월 26일(화) 16:00까지							
접수방법	1개를 2 * 제출 ○ 접수시형	샤별 주관기관 지정된 접수치 서류 및 관련 한 내 접수처 ! 은 제안사항 !	님에 접수 양식은 공 도착분에	시한 내 고된 홈 [‡] 한해 접 ⁴	비대면 저 테이지에서 누하며, 접수]출(8.접수치 다운로드('2 · 후 분야별	러 및 문의 21.1.6일 기 결 주관기	방법 참고)

2. 블라인드 펀드

가. 기본항목

항 목	세부내용
출자대상	 ● 투자제안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의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벤처투자조합 ○ 상기와 유사한 목적의 국내외 집합투자기구, 투자조합 포함
투자기구	✔ 뉴딜성장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의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공통사항) 선정된 위탁운용사는 관련 법규의 신설·변경 등의 사유로 투자기구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투자기구에 대한 운용 자격을 갖추고 있고 본건 펀드의 운용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결성 전까지 변경 가능
심사결과 발 표	2021년 2월말 [*] * 지원결과, 코로나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최종 선정은 정책출자자의 내부 승인절차가 모두 완료된 후 확정
펀 드 결성시한	선정일로부터 8개월 [*] * 정책출자자 협의하에 2개월 이내 연장가능
운 용 사 신청자격	 ○ 제안서 접수일 현재 「출자대상 투자기구」의 관련 법규에 따른 펀드 결성과 업무집행이 가능하도록 국내에 설립된 법인 - 제안운용사가 외국법인일 경우, 국내법 적용 등의 제한이 없도록 제안서 접수일 이전까지 국내법인 설립을 완료해야 함(사전협의 요망) ○ 제안 운용사에서 운용중인 기존 펀드 정관(규약)에 유사한 목적을 가지거나 경합 소지가 있는 펀드 설립을 금지하는 경우 지원 주관기관과 사전 협의 요망 ○ 제안 운용사가 유한회사이고 동사의 출자자들이 유한회사 형태로 기존 펀드를 운용한 실적이 있는 경우, - 기존 펀드 운용사와 제안 운용사의 최대 출자자가 동일하거나 기존 펀드 운용사에 참여한 개인 출자자중 2/3 이상이 제안 운용사의 출자자로 참여하면, 기존펀드 운용 실적을 본건 제안 운용사 실적으로 인정하여 평가 - 단, 신설되는 유한회사가 제안 운용사로 참여할 경우, 법인 설립은 접수일자 이전에 완료되어야 함 ○ 2개 이상의 운용사가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 각각 신청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주 목 적 투자비율

항 목 세부내용

- 투자제안형, ② 뉴딜성장형 공통
- 뉴딜 투자 가이드라인*상 40개 분야에 목표 결성금액의 [60%] 이상 투자 * 40개 분야 및 200개 세부 품목은 **별도 엑셀파일 참고**
- 국내 중소·중견기업*에 목표 결성금액의 **[50%]** 이상 투자
 - * 대기업의 중소·중견기업 협업 프로젝트 및 펀드의 투자를 통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에서 분리되는 중소·중견기업 포함
- 투자제안형 한정
- 운용사가 (1), (2) 중 하나를 주목적투자 분야로 선택하고, 목표결성금액의 [정책출자비율*+10%p] 이상 투자
 - * 선택사항에 따라 정책출자비율이 상이하므로 선택시 유의(p4 참조)
- (1) 아래 6대 핵심 뉴딜산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목적 투자분야로 제안

구 분	세부 뉴딜분야
D.N.A.	첨단영상진단, 첨단외과수술, 감각센서, 객체탐지, 광대역측정, 감성형인터페이스,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컴퓨팅, 가용성강화, 능동형컴퓨팅, 소프트웨어, 실감형콘텐츠, 지능형데이터분석, 차세대 무선통신미디어, 게임, 고부가서비스, 핀테크, 로봇, 항공·우주
미래차· 그린모빌리티	객체탐지, 광대역측정,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 친환경발전, 차세대 무선통신미디어, 차세대 동력장치, 환경보호
──진환경· 녹색산업	친환경소비재,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 에너지효율향상, 친환경발전, 능동형조명, 실감형콘텐츠, 로봇, 신제조공정, 바이오소재, 스마트팜, 환경개선, 환경보호
뉴딜서비스	맞춤형의료, 스마트헬스케어, 차세대 진단, 차세대 치료, 첨단 영상진단, 첨단외과수술, 친환경소비재, 감각센서, 객체탐지, 광대역측정, 감성형인터페이스, 웨어러블디바이스, 가용성강화, 능동형컴퓨팅, 소프트웨어, 실감형콘텐츠, 지능형데이터분석, 차세대 무선통신미디어, 게임, 고부가서비스, 광고, 디자인, 영화/방송/음악/애니메이션/캐릭터, 창작공연전시, 핀테크, 로봇, 바이오소재
SOC·물류 디지털화	객체탐지, 광대역측정,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향상, 친환경 발전, 능동형컴퓨팅, 지능형데이터분석, 차세대 무선통신미디어, 고부가서비스, 차세대 동력장치, 항공·우주
스마트제조·, 스마트팜	객체탐지, 능동형컴퓨팅, 지능형데이터분석, 로봇, 신제조공정, 스마트팜

- * 6대 핵심 뉴딜산업의 세부 품목은 **별도 엑셀파일 참고**
- (2) (자율제안) 운용사가 펀드 운용전략,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투자주제(예; 신재생에너지, 비대면 등)를 제시하고, 뉴딜 투자 가이드라인상 40개 분야 중 투자주제에 적합한 18개 이내의 분야를 선택하여 주목적투자 분야로 제안

다. 주요 출자조건

<u></u> 항 목	세부내용					
<u> </u>	0000 - 200			., -	.1 -1 -1 -1	300 37 36
	운용사는 투자 위험도, 민간 투자수요 등 을 고려하여 정책출자비율을 기준비율 대비 5%p 가감하여 제안 가능					
	● 투자제안형					
	(1) 6대 핵심 뉴딜산업을 주목적투자분야로 제안하는 경우, 기준비율 35%					
	(2) 18개 분야를 선택하여 주목적투자분야로 제안하는 경우, 기준비율 30%					
정책출자	<	정책출자	비율 및 주	목적투자비	율(예시)>	
비 율	구분	뉴딜 6대] 핵심산업	선택시	18개 분야	자율선택시
	정책출자비율	30%	35%	40%	25% 30	35%
	주목적투자비율	40%	45%	50%	35% 40	45%
	※ 운용사는 제안한 대한 근거를 제인		•		•	
	② 뉴딜성장형: 정책	출자비율	- 30%로 >	세안		
운 용 사출자비율	* 펀드 목표결성금액의 하향조정이 있는 경우라도 조정 선 목표결성금액 (제안규모 자율제안시는 제안규모 기준)의 의무 출자금액 이상 출자해야 함 * 유한회사(LLC)의 경우 운용인력 출자금액은 운용사 출자금액으로 인정					
 존속기간	※ 운용사 우선손실충당 설정 의무 없음 ○ 펀드 결성일로부터 10년 이내					
 투자기간	○ 펀드 결성일로부	터 5년 o]내			
납입방식	○ 수시납(Capital ca	all) 또는	분할납			
	○ 관리보수 : 펀드	최종 결	성규모에 -	구간별 관리	보수율을 적	역용하여 합산
	구 분		≤500	≤1,000	≤2,000	2,000<
	결성일~2년(약정청 2년~만기(투자잔		2.3% 이내	1.8% 이내	1.2% 이내	0.5% 이내
운용보수	○ 성과보수 : ① 또는 ② 택일 ① 기준수익률 초과수익의 20% 이내 ② [기준수익률 + 2%p] 초과수익의 20%, Catch-up 40% 이내					
	○ 기준수익률 : 내부수익률(IRR) 기준, 7% 이상 자율제안, 투자제안형의 경우 투자 난이도, 리스크, 투자수요 등을 감안하여 4%까지 하향 제안 가능					
	○ 상기 보수 체계를 제안 가능(사전 [†]			수심의 관리	·성과보수를	연계 구성하여
	※ 펀드별 보수 체계	는 선정 시	개별 협의	를 거쳐 최종	· 결정됨	

항	목	세부내용

- 민간출자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인센티브로, 아래 복수선택(①③ 또는 ②③), 단일선택, 미선택 가능
 - * 민간출자자 범위: 운용사, 운용사의 특수관계인 및 계열회사, 정책기관(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을 제외한 출자자. 연기금·공제회와 같은 민간자금 운용 관련 기관투자자는 민간출자자에 포함하며,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획재정부 장관 지정 기준임(알리오 홈페이지 www.alio.go.kr 참고)
- ※ 인센티브 선택 여부는 평가와 무관

① 초과수익 이전

- 펀드수익률이 기준수익률을 초과시, 정책출자자 앞 배분될 초과수익* 중 10% 이내** 금액을 민간출자자에 인센티브로 지급
 - * 펀드수익률이 성과보수 지급 기준수익률을 초과 후 정책출자자(정부재정, 한국산업은행, 성장사다리펀드) 앞 배분되는 금액
- ** 지급 시점시마다 민간출자자 비중을 아래의 산식에 적용하여 지급률 산정 초과수익 지급률 = 10% × (민간출자자비중/50%) (단. 최대 지급률은 10%이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민간출자자 인센티브

② 후순위 보강

- 펀드의 운용결과 손실 발생시, 민간출자자 출자액의 10% 이내에서 정부 재정을 재원으로 우선 손실 분담
- 단, 펀드수익률이 기준수익률을 초과할 경우, 민간출자자에 배분될 초과수익의 10%를 후순위 출자자에 이전하는 구조로 제안해야 함*
 - * 이전 한도: 후순위 보강금액

③ 콜옵션

- 투자기간 종료시점에 사전에 정한 행사가격*으로 재정출자금액을 한도로 민간출자자 지분율** 이내에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부여
 - * 행사가격 = 재정출자액 × [1 + (결성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2.0%)]^{경과기간}
 - ** 전체 민간출자자 지분 중 개별 민간출자자 지분

항 목		세부내용				
	배분될 초과수익의 일부	○ 운용사는 기본, 선택 인센티브(①, ②, ③중 택일) 충족시 정책출자자 앞 배분될 초과수익의 일부를 달성률에 따른 비율만큼 부여받음 ※ 각 인센티브 판단기준은 투자시점 기준임				
	○ (기본) 뉴딜분야에 대한 투자실적 - 뉴딜분야*에 대한 의무투자비율 초과실적[(뉴딜분야투자금액 합계/목표결성금액) - 의무투자비율]					
	초과달성비율 10%p 이상 15%p 이상 20%p 이상					
	인센티브 지급 비율	2% 이상	3% 이상	5%		
	* 뉴딜분야(투자제안형은 6대 핵심 뉴딜산업 등 선택분야 기준) 의무투자비율 기준					
	① (선택) 신주 보통주 투자실적					
	- 중소·벤처기업 신주 보통주 투자실적(보통주투자금액 합계/총 투자금액)					
운 용 시	신주 보통주 투자 비율 20% 이상 30% 이상 40% 이상					
추 기		2% 이상	3% 이상	5%		
인센티브	② (선택) 기술우수·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실적 - TCB(TI) 4등급 이상, 혁신기업 1000에 대한 투자실적 (투자실적 합계/총 투자금액)					
	혁신·기술우수 투자비율	20% 이상	30% 이상	40% 이상		
	시계리고 키그 비 0	00/ 61 21	رور ما <u>دا</u>	F0/		

혁신·기술우수 투자비율	20% 이상	30% 이상	40% 이상
인센티브 지급 비율	2% 이상	3% 이상	5%

- ③ (선택) 정책펀드 투자기업에 대한 후속투자(Follow-on) 실적
 - 초기투자* 이후 후속투자**실적(후속투자금액 합계/총 투자금액)

후속투자 비율	20% 이상	40% 이상	50% 이상
인센티브 지급 비율	2% 이상	3% 이상	5%

- *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또는 투자 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단, 직전 3년내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초과한 적이 없을 것)인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펀드(한국산업은행, 성장금융, 모태펀드 출자펀드)의 신주 투자
- ** 정책펀드 투자 후 4년 이내 신주로 후속투자(동일 펀드내 후속투자 인정)

○ 핵심운용인력 총 3인 이상 참여

- 제안펀드 규모 및 운용 전략, 운용인력의 경력, 역량 및 실적 등을 감안 하여 적정 수준의 인원으로 제안

핸 심 운용인력 ○ 자격 요건

- - 핵심운용인력은 일정 기준 이상의 투자경력 요건*을 충족해야 함
 - * 핵심운용인력 관련 세부 사항은 주관기관별 제안서 엑셀 서식 '작성요령' 참조

항 목	세부내용
	○ 핵심운용인력(대표펀드매니저 포함)이 투자기간 중 본건 펀드를 포함하여 핵심운용인력으로 참여할 수 있는 펀드의 개수는 4개*를 초과할 수 없음 *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하고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한 펀드는 미포함
	○ 펀드 결성 시 핵심운용인력은 정관(규약)에 기재
	○ 공동 운용의 경우 운용사 당 핵심운용인력 2인 이상이 참여하여야 함
	※ 한국산업은행 주관리그
	○ 핵심운용인력 중 대표펀드매니저 1인 지정 - 공동 운용의 경우 운용사 당 대표펀드매니저 1인 지정
	○ 제안사는 선정 심사 시 평가대상이 되는 핵심운용인력 3인(대표펀드매니저 1인, 핵심운용인력 2인)을 지정*하여 제안서 제출 - 공동 운용의 경우 운용사 당 2인(대표펀드매니저 1인, 핵심운용인력 1인)을 지정 * 대표펀드매니저와 핵심운용인력의 평가 가중치가 차등 적용됨
출 자 자 제 한	○ 출자자는 국내 기관투자자, 법인이 원칙 - 단, 개인출자자(운용인력, 특수관계인 등), 타 집합투자기구(사모투자신탁 등), 해외출자자 등은 주관기관 앞 사전협의
스디 ᅱ 기	○ 주관기관이 제시하는 금융기관 Pool에서 선정
수탁회사	○ 펀드자산의 관리는 수탁회사와의 업무지시서를 통해서만 가능
회 계 감 사 인	○ 주관기관이 제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회계감사인 선정
	○ 펀드 전자보고 시스템 사용 의무
	○ 펀드운용 등에 대해 출자 주관기관이 지정하는 전자문서 방식으로 보고
	○ 시스템 구축 및 사용 비용은 운용사가 부담
편 드 전자보고 시 스 템	○ 펀드 투자실적에 대해 IGS(혁신성장 인텔리전스시스템)를 활용한 뉴딜 투자 실적 제출 의무 -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목적에 따라 뉴딜 투자실적 및 집계를 위한 사항 으로 정관(규약)상 비밀유지 조항의 예외사항으로 정관(규약)에 반영하며 피투자 기업의 정보 제공 동의 필요 * 제공정보: 투자기업개요(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업종코드, 기업규모, 설립일자, 지역 구분), 식별정보(구분, 식별번호, 뉴딜 품목코드, 기표일, 기표금액)
공정가치 평 가	○ 운용사는 펀드 투자자산에 대하여 한국산업은행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외부 평가기관의 공정가치평가 의뢰 및 동 결과를 반영한 '지분법(연결)' 패키지를 한국산업은행 앞 제출 (정관(규약) 반영사항)

항	목	세부내용
		○ 본 공고에 의해 운용사가 제안한 출자조건(출자금액, 보수, 인센티브 등)의 적용 여부는 선정 후 최종 결정 예정임
		○ 최다출자자 우대 - 출자자 모집과정에서 최다출자자에 한해 관리보수 등 일부 출자조건을 우대적용(예; 관리보수 인하) 가능 - 주목적 투자분야, 비율 등 뉴딜펀드 조성목적을 훼손하는 조정 불가
		○ 투자촉진 인센티브 - 조기결성 및 투자 촉진을 위해 선정 후 6개월 내 목표결성금액 모집하고 '21년말까지 목표결성금액의 10% 이상 투자할 경우 제공 - 주관기관 일괄심사방식의 재정출자사업 서류심사에서 가점 부여
		○ 운용사는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병행펀드(Parallel 펀드) 구조로 제안 가능하며, 이 경우 병행펀드와 본건 제안펀드를 합산하여 정책출자자 출자비율을 산정 - 세부 운용조건은 병행펀드와 동일하거나 유리한 조건이어야 함 - 병행펀드의 결성일은 제안펀드의 결성일보다 늦을 수 없음
7]	타	* 다만 선정 후 결성과정에서 병행펀드 구조를 희망하는 경우, 세부 운용조건, 결성일 등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 한국벤처투자 [*] 출자사업에 공동 출자할 수 없음 * 기타 정책출자기관의 경우에도 정책자금의 효율적 집행 차원에서 사전 협의 요망
		○ 주관기관의 내규, 정관(규약)을 우선 적용 - 주관기관의 리스크관리 목적상 펀드 투자대상(편입가능 자산 유형) 및 차입 행위 등에 대한 정관(규약)상 별도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책임투자(ESG, 스튜어드십코드 등) 관련 운용사 내규, 구축 및 운영 현황, 도입 계획 등에 대해 제안서(V. 기타)에 기재해야 하며, 심사시 반영 - 환경보호(E), 사회적 책임(S), 적정한 지배구조(G) 요소 등을 종합 고려
		○ 미합중국의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 최종 시행규정(Volcker Rule Implementing Regulations) 등을 준수해야 함
		○ 본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사모투자 일반 관행에 따르며, 결성 과정에서 주관기관과 개별 협의하여 결정함

3. 프로젝트 펀드(3 투자제안형 분야)

가. 기본항목

항 목	세부내용
운 용 사 선정방법	○ 홈페이지* 공개모집 공고를 통해 주관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함 - 운용사, 운용인력, 펀드운용계획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함 *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www.kgrowth.or.kr
접수일시	○ 수시 접수
심사결과 발 표	○ 수시 선정 ※ 최종 선정은 정책출자자 내부 승인절차가 모두 완료된 후 확정됨
편 드 결성시한	○ 최종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 [*] * 단, 부득이한 경우 정책출자자 협의하에 2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

나. 출자조건 등은 상기 블라인드 펀드 조건의 내용 범위 내에서 제안심사 시 포함하여 심사하고 최종적으로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4. 선정 우대 항목 (블라인드 펀드에 한함)

- 운용사(계열회사 제외)가 최소출자비율을 초과하여 출자 제시한 경우
- 주관기관의 위탁 운용 펀드 청산 수익률이 우수한 경우
-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방안」 관련 **투자 촉진 및 조기 결성** 인센티브를 달성한 경우 (개별 증빙 제출 및 협의 필요)

5. 선정 배제, 취소 기준 (전분야 공통)

□ 선정 배제

- 법령 등의 준수와 관련하여 운용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 사유로 펀드의 적법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안시점 현재 법령 위반 또는 시정 명령 미이행 상태에 있는 경우
 - 제안서 작성 기준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법령위반으로 관계 감독기관 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바 있거나, 시정명령 이행 실적이 양호하지 않은 경우
- * 다만, 본 펀드 운용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제재내역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 선정 배제사유에서 제외 가능함

- 회사 및 펀드 운영상 도덕적 해이 또는 제3자 경유 등을 통해 사실상 법령을 위반한 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
- 자산건전성이 취약하거나, 제안서 작성 기준일로부터 2년내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위탁운용사로서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투자업체 발굴 및 투사의사결정 등 펀드 운용과정에서 대주주 등 외부의 압력 으로 위탁운용사로서 독립적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안 펀드의 핵심운용인력과 운용사 대표이사가 제안서 작성 기준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감독 당국으로부터 감봉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
- 위탁운용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형사상 소송의 진행, 리스크관리, 컴플라이언스 등의 위험관리체계 부재, 경영권 불안정, 운용인력의 잦은 이동 등으로 펀드의 안정적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정책출자자가 출자한 펀드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의무의 불이행 행위 등을 한 위탁운용사로서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 고의적 누락 또는 중대한 오류 등으로 중요한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기재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공고일 이후 위탁운용사 또는 제3자가 출자자의 선정 절차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선정 취소

- 펀드의 목표결성금액(조정된 경우 조정 후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 본 펀드의 출자조건을 위탁운용사가 수용하지 않아 규약(정관)협의 등 후속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위탁운용사가 타 출자자의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사실이 허위 또는 의도적인 조작으로 밝혀지는 경우
- 위탁운용사가 법령 위반 또는 시정명령 미이행 상태이거나 기타 우회적인 방법 등으로 사실상 법령 위반 상태에 있어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파단되는 경우

○ 위탁운용사 선정 후 결성총회까지 선정 배제 사유 또는 당해 펀드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제재 사항 및 기타 (전분야 공통)

□ 제재 사항

- 결성시한(협의에 의한 연장기간 포함) 내 펀드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위탁운 용사 또는 선정이 취소된 위탁운용사에 대해서는 각각 결성시한 또는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의 범위 안에서 출자 제한할 수 있음
 - 다만, 관련 법규상 제한 등의 사유로 인해 펀드결성이 지연될 경우 제재부과 대상에서 제외 가능함
- 선정된 펀드가 존속기간 중 규약(정관)상 투자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위탁운용사에 대해 1년 이하 출자 제한하며, 기지급된 관리보수를 환수 하거나 성과보수를 미지급할 수 있음
- 선정된 운용사가 출자확약서 등의 제출에 따라 우대를 받았으나 그 사실이 허위 또는 의도적인 조작으로 밝혀지는 경우 5년 이하 출자 제한되고, 실제 출자금액이 당초 제출한 출자확약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년의 범위 안에서 출자 제한할 수 있음
- 출자대상 투자기구 결성일로부터 1년 경과 시점까지 최초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출자대상 투자기구를 해산할 수 있음

□기타

- 제안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의 허위사실 기재 시 평가대상 에서 제외하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함
 - 특히, 운용사 및 운용인력의 투자실적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허위, 조작하여 제출하거나 누락한 것이 밝혀지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선정 이후 에도 선정을 취소하며 확인일로부터 5년 이하 출자 제한함
- 제안서 작성기준일은 2020.12.31(목)로 하며, 핵심운용인력 등의 참여 인력은 접수일 현재 기준으로 함

7. 선정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bigcirc 공고 \rightarrow 제안서 접수 \rightarrow 서류심사 \rightarrow 현장실사 \rightarrow 구술심사 \rightarrow 최종 선정

□ 선정 일정

일 자 내 용		비고	
2021. 1. 26(화) 제안서 접수		10:00~16:00	
2021. 2월말	최종 선정	개별 통지	
2021. 4월중	출자확약서 발급	출자자 내부 승인절차 완료 후	
2021. 10월말	펀드 결성 완료	2021. 10.29 限	

^{*} 세부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수시 추가 출자사업 안내

- □ 정시 출자사업 선정결과에 따라, 보완 및 정책적 지원 필요 분야 등에 대해 `21년 중 수시 출자사업을 진행 예정
 - (공고시기) 정시 출자사업 운용사 선정 완료후
 - (출자분야) (예시) 정시 보완필요 분야, 지역뉴딜, 루키 등
 - 공고시기와 출자분야는 변동될 수 있음

8. 접수처 및 문의방법

□ 접수 및 문의방법

- 아래 주소를 참고하여 접수시한 내 퀵서비스, 우편 등으로 비대면 접수
 - 접수증은 발급되지 않고, 제출서류 도착 확인 후 개별 유선통지 예정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출자사업 설명은 온라인('21.1.6일)으로 실시하며, 이메일 문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FAQ를 출자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1.14일) 예정
-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아래 이메일을 통해 협의(문의사항 집계, FAQ작성 등을 위해 유선 문의 최소화)

구 분	❶투자제안형(1,200억원 초과), ❷뉴딜성장형	●투자제안형(1,200억원 이하), ❸투자제안형(프로젝트)
주관기관	한국산업은행 간접투자금융실	한국성장금융 투자운용본부
주 소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4 한국산업은행 간접투자금융실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2 여의도파이낸스타워 5층
전화번호	02-787-0670, 0680, 0681	1 02-2090-9104(혁신금융1팀) 3 02-2090-9113(혁신금융2팀)
E-Mail	kdbindirect@kdb.co.kr	mk.lee@kgrowth.or.krsw.lee@kgrowth.or.kr

2020년 12월 29일

한 국 산 업 은 행한 국성장금융투자운용